

가공식품 한·중 FTA 특혜활용

한·중 FTA 물품별 원산지 기준

‘해외원료로 만든 라면·커피믹스 한국산 인정’ 화장품도 국내서 생산 마치면 관세 혜택 (2014. 11. 12.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

신선 농산물	재배부터 수확까지 국가 안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소시지, 라면, 베이커리 등	생산공정이 국가에서 이루어지면 인정
섬유류	원사 직물 의류 중 두 단계 이상이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기계, 전자제품	조립 등 완공 단계만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면 인정(일부 민감 품목은 제외)
자동차	결합기준(총부가가치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자동차 부품	결합기준(총부가가치의 40% 혹은 50% 이상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1. 한·중 FTA 원산지 규정 어떻게 적용되나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핵심 쟁점이었던 원산지 기준(PSR)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중국이 농산물에서 양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원산지 기준을 갖고 공산품 시장을 방어하려다 보니 의견차가 컸다”고 말했다. 가공무역 비율이 큰 한국을 원산지 기준을 활용해서 견제하려고 한 것이다.
- 중국은 완성품 생산지를 따지는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비율을 따지는 부가가치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결합기준 품목 수로 처음에는 1,010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해 이 품목 수가 전체의 0.9% 수준인 47개로 줄었다. 한국의 역대 FTA 중 가장 적은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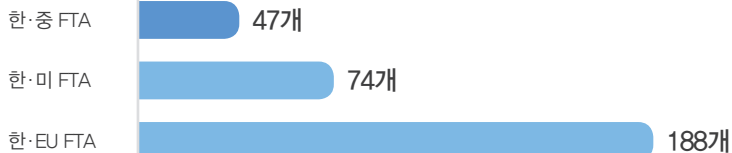
2. 라면은 모두 국산품 인정

- 농수산물 원산지를 규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신선농수산물에 대한 기준이고 하나는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이다. 한·중 FTA에서 신선농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재배하거나 수확한 제품만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키운 소를 들여와 국내에서 도축한다고 이를 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 가공식품은 원재료에 상관없이 생산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산으로 인정된다. 해외에서 원재료를 가져와 생산하는 커피믹스나 해외에서 생산된 고기를 들여와 만드는 소시지 모두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면도 제조공정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면 모두 국내산으로 인정된다.
- 한·미 FTA에서는 양념에 한국산 쇠고기가 들어가면 이를 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우는 구제역이 있다고 봐서 미국은 한우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는 호주산 쇠고기를 넣은 라면을 수출하고 있다.
- 하지만 한·중 FTA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산공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만 따지기로 했다. 따라서 라면 등 가공식품이 관세 인하 효과를 크게 입을 것으로 보인다.

3. 의류·직물은 두 단계 이상

- 의류 중 일반 섬유직물은 여러 공정 중 두 단계 이상이 국내에서 이뤄져야 국내산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호주산 양모를 들여와 우리가 실로 만들고 또 이어 원단으로 만들면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의류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하지만 국내 업체들이 비용 등의 문제로 하부 공정은 모두 해외에서 하고 최종 공정만 국내에서 하는 사례가 많아 이런 업체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의류에 대한 관심과 매출이 늘어가고 있는데 최종 생산 기준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게 함으로써 FTA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게 한 것이다.

결합기준 적용 품목 수



결합기준 = 국내산국외산을 판단하기 위해 재료 원산지과 제조 원산지, 실제 판매지, 부가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4. 한국산 화장품 날개 달 듯

- 석유화학 제품 중 석유제품과 화장품, 플라스틱 등은 우리 측 주장대로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료가 어디에서 오든 최종 공정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산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 산업부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첨단화학제품 등은 민감하게 생각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우리 측 의견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런 기준 덕분에 국내산 화장품 주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화장품을 생산하는 한국콜마 등도 한·중 FTA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5. 전자제품은 결론 못 내

- 해외에서 부품이나 중간재를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전자업계도 한숨을 놓게 됐다. 기계·전자제품 원산지 기준을 세번변경 기준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민감 품목에 포함되는 전자제품은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 논란이 된 자동차는 결합기준을 적용하되 완성차는 부가가치 기준을 60%로 하고 부품은 부가가치 기준을 제품에 따라 40%와 50%로 나눠서 하기로 했다.